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556호
- 발 의 자 : 정진술 의원(찬성자 32명)
- 발의일자 : 2021년 8월 9일
-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2. 제안이유

- 가. 2021.5.18. 개정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서는 아동이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되었음.
- 이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가활동 지원 사업 대상에 '18세 미만의 아동'을 명시하여 아동의 적절함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에 대한 여가 보장 정책추진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가활동 지원 사업 대상에 '18세 미만의 아동'을 추가 · 명시함(안 제9조제5호).

4.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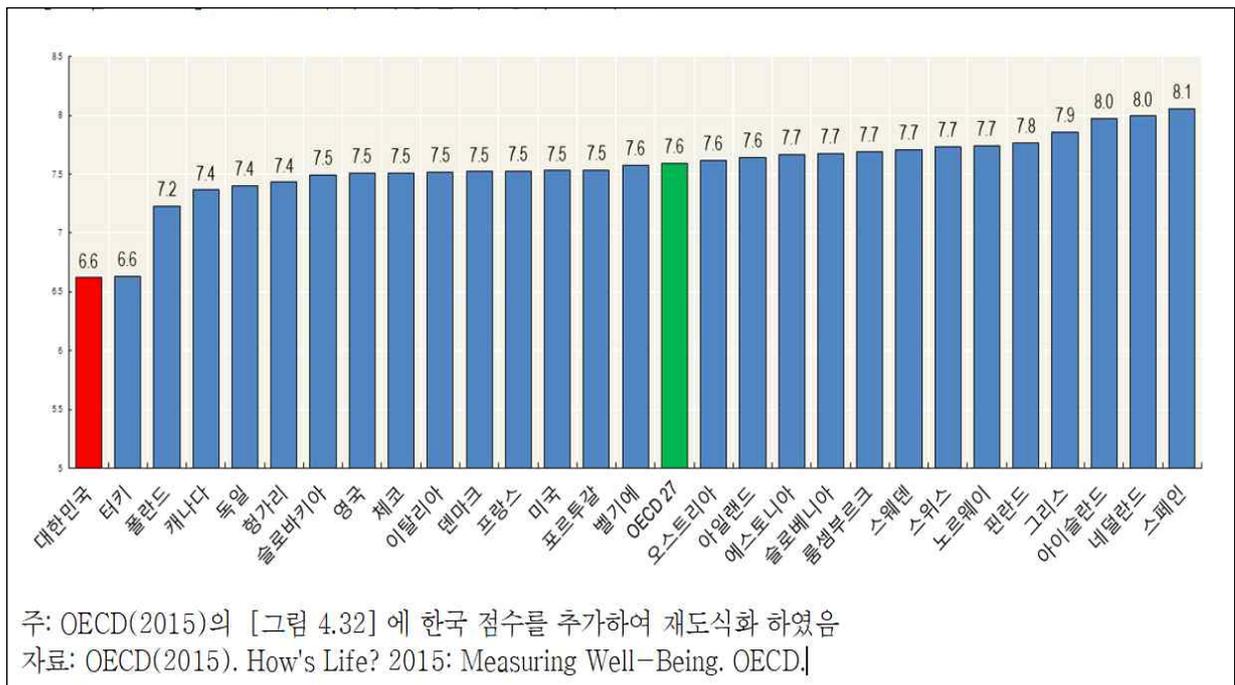
- 가. 관계법령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5. 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4조가 개정됨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이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우리나라 아동의 학습과 놀이 간 불균형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15세 아동의 학업성취도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지만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평균에서 크게 뒤처지는 수준임.

< OECD 국가 아동들의 행복도 비교 >



- 아동의 여가 보장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등에는 아동의 여가 증진을 위한 시장의 지원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에는 아동을 별도로 규정한 의무가 없음.

< 아동 여가 관련 조례 현황 >

조례명	조문내용(조항)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p>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3. <u>아동은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4. ~ 5. (생략)</p>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놀이권"이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자유롭게 휴식 및 <u>여가를 즐기며</u>,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놀이공간에서 충분히 놀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p> <p>3. ~ 4. (생략)</p>

- 개정안은 아동의 여가 보장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아동의 여가 향유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서울시는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지영	02-2180-8115

의안번호
2556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정진술		2021.08.0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가활동 지원 사업 대상에 '18세 미만의 아동'을 추가·명시함(안 제9조제5호)				
추진경과	○ 2021. 5. 18.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 개정 -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이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시행 2021. 8. 19.]				
부 서 검 토 의 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2553, 2543 동일안건으로 안건병합 등 필요				
대응방안	○ 원안 가결으로 별도의 대응방안 없음				
상 임 위 처 리 결 과	○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보류, 미상정으로 구분) - 수정가결시 수정내용, 부결·보류·미상정시 사유 기재				
향 후 계 획	○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팀장	홍우석(☎2133-2512)	담당	구민수(☎2133-2516)